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6. 8. 21.

○ 회부일 : 2022. 8. 24. (의안번호 : 26-74)

2. 제안이유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마포사랑상품권 잔액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품권 관련 용어 정의 명시(안 제2조)

○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의 처리방안 신설(안 제5조의3)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 및 제7조)

○ 기타 중복표현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별지 서식 정비

4.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개정 협조 요청’ 서울시 공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5369(2026. 4. 24.)호]

○ 입법예고 : 2026. 7. 16. ~ 2026. 8. 5.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마포사랑상품권 잔액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에서는 마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및 할인보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품권 유통지역을 마포구 일원으로 명확히 함.

○ 안 제5조의2에서는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마포구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의3에서는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부터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의 환급과 할인보전금의

세외수입 귀속 등에 관한 처리절차를 신설함.

○ 안 제6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절차를 보완하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함.

○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품권 활성화 정책, 잔액 환급 및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법적 타당성 검토

○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 특히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상품권·판매대행점·가맹점 등의 정의는 상위법의 정의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상품권 유통지역을 마포구 일원으로 정한 것도 상위법상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는 원칙과 부합함.

○ 따라서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품권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4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본 개정을 통해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가맹점 관리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특히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미사용 잔액의 처리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본인부담금 환급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맹점 등록과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조례 간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상품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마포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유통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검토 및 유의사항

○ 안 제5조의3의 소멸시효 및 잔액 처리 규정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상위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소멸시효를 구매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법적 성격 및 기산점을 구분하여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계좌로 자동 환급하고, 일정 기간 환급신청이 없을 경우 이를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규정은 이용자의 재산권

과 직접 관련되므로 상위법상 근거, 민법상 소멸시효 및 부당이득 관계, 전자금융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정의, 자금관리,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미사용 잔액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상품권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5조의3에서 상품권 소멸시효를 ‘구매일부터 5년’으로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의 ‘발행일부터 5년’인 유효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부분 역시 이용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만큼 법적 근거와 환급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마포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⑤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마포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마포사랑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소멸시효)

①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페이 이용자 약관」

제11조(유효기간)

① ‘상품권’ 구매금액의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단, ‘시’는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수당’의 유효기간은 ‘시’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점부터 기산합니다.

④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고객은 ‘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사’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의 금액에서 할인보전금의 비율에 따라 남은 잔액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제12조(소멸 시효)

①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판매대행사’에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대행사’가 자발적의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